

## 법학연구소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연구소는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홍익대학교 부설로 한다.

제2조(위치)본 연구소는 홍익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본 연구소는 국내외의 법학과 법정정책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 이론의 연구
2. 판례와 실무 연구
3. 연구역량 강화 사업
4. 다른 법학 연구기관 및 법률실무자와의 교류
5. 연구 결과물의 출판
6. 학술세미나 개최
7. 법률 상담
8.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 장 1인
2. 운영위원 약간명
3. 감 사 1인
4. 상임간사 1인
5. 자문위원 약간명

제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인문사회분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속사업을 수행하는 임원은 사업기간의 임기를 보장한다.

②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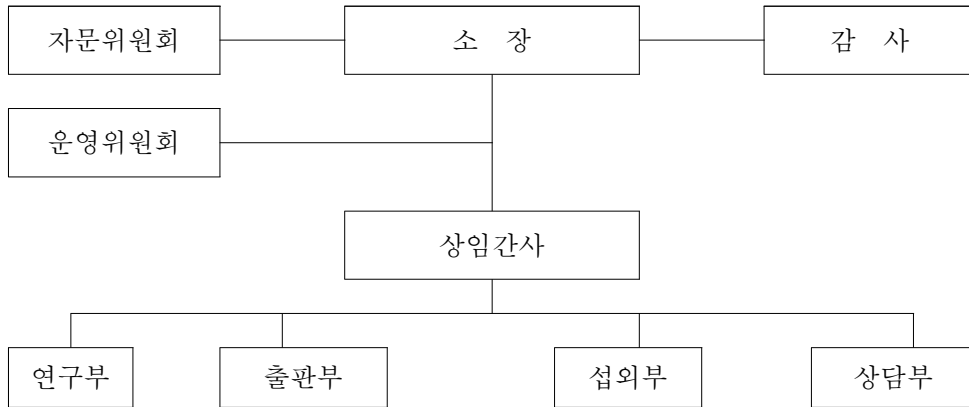
- ①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내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소의 운영위원이 된다.
- ②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감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④상임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⑤자문위원은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 ①소장과 감사는 홍익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상임간사 및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자문위원은 교내외의 저명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3장 조직 및 요원

제9조(조직)연구소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는다.



제10조(연구원)

- ①연구소에 연구위원(상임연구위원, 비상임연구위원) 및 연구원과 연구생을 둘 수 있다.
- ②연구위원은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홍익대학교 교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③연구원은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 ④연구생은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직제)연구소의 직원 및 요원의 임면, 복무에 관하여는 본교 직원의 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르고,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회계

제12조(경비)연구소의 경비는 홍익대학교의 보조금과 자체수입 및 외부의 찬조금으로 한다.

제13조(기금적립)연구소의 수입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연구소 기금으로 연구소내에 적립한다.

제14조(회계)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하며, 기말에 결산한다.

제15조(예,결산의 승인)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사업 및 운영비

제16조(사업비)본 연구소의 사업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및 교내외 세미나 개최, 기타 사업 관련비로 지출한다.

제17조(운영비)본 연구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다.

- ①연구소 비품 및 소모품비
- ②연구소 회의비

첨부 2

③연구소 우편비

④기타 운영비

부칙

1. (시행일)이 규정은 199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